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0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 황명선 · 황정아 · 조인철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차지호

송재봉 · 염태영 · 이해식

서미화 · 한준호 · 조계원

장경태 · 박수현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 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,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)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제8조의5(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)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야 한다.